

###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2. 4. 27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4. 27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95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5. 7) 상정
- 제95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5. 7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□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『주5일근무제 시범실시』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하고,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『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』하는 방식에서,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『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』토록 함(안 제20조제2항)

【산출방식】

$$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2001.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

정비함(안 제2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91호
의결년월일	2002. 5. 10 (제95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4. 2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행정기관의 『주5일근무제 시범실시』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(토요일휴무제 도입)하고,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연 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『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』하는 방식에 서,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『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』토록 함(안 제20조제2항)

【산출방식】

$$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12월

-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2001.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(안 제22조)
- 개정조례(안)
  - 따로 붙임
- 신·구조문대비표
  - 따로 붙임
- 관계법령 발췌서
  - 행자부 운영12100-274(2002. 3. 23)호와 관련임
- 관련사업 계획서
  - 해당없음
- 예산수반 사항
  - 해당없음
- 사전예고 결과
  - 해당없음

부천시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#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 제목 중 “토요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로 하고 동조제1항 중 “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”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

$$\text{휴직자의 연가일수} \times \frac{\text{12월 - 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\text{12월}} =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의2(토요일전일근무제) ①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 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결근일수·휴직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(신설)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16조의2(토요일전일근무제) ①..... ..... .....<u>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<u>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u></p> 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<u>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u></p> <p>②<u>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.5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 미만은 절사한다.</u></p> <p>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</p> $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22조(공가)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<u>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</u></p> <p>6.~8. (생략)</p>	<p>제22조(공가)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</u></p> <p>6.~8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